

#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호	3499
-----------	------

2026년 3월 10일  
교육 위원 회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년 2월 9일, 김형재 의원
2. 회부일자 : 2026년 2월 12일
3. 상정일자 :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6년 3월 10일 상정, 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형재 의원)

#### 1. 제안이유

-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급속한 확산으로 학교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과 과제 수행이 일상화되고 있으나, 수행평가 과정에서 인공지능 활용 범위와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생 간 평가의 공정성 훼손, 학습 성취도의 왜곡, 교사의 평가 신뢰도 저하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이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인공지능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생·학부모·교직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제9조(인공지능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기준' 항목 추가(안 제9조제6호)

###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박광선)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6년 2월 9일 김형재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3499호로 발의되어 2026년 2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동 개정조례안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보급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수행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 활용 기준을 지침에 명시하고자 발의되었음.

#### 2. 주요 검토의견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수립하는 인공지능윤리 지침의 내용에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기준'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신설 규정임.
- 동 개정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1)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와 함께, 같은법 제62조제1항2)의 지능정보사회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판단됨.

- 또한, 동 개정안은 최근 교육 현장의 화두인 AI 대필 등 성적 산출의 왜곡 문제를 해소하고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침의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교사가 수행평가 시행 전 AI 활용의 범위와 채점 기준 등을 명확히 수립하도록 독려하고, 학생에게는 출처 표기 등 올바른 디지털 윤리 역량을 함양하도록 돕는 자치법규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현행 조례 제9조(인공지능 윤리 지침)의 입법 취지 및 체계상 완결성을 높이는 적절한 입법 조치로 사료됨.
-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의견 없음”으로 회신하였음.(행정관리담당관-2277, 2026.2.20.)
- 참고로 지난 2025년 12월 23일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AI) 활용 관리 방안」<sup>3)</sup>을 마련하여

1)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이용할 때 안전성·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제62조(지능정보사회윤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이용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성·책임성·통제성·투명성 등의 윤리원칙을 담은 지능정보사회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2. 지능정보사회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3. 지능정보사회윤리 관련 연구 및 개발
4. 지능정보사회윤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3) 교육부 보도자료, 2025.12.23.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AI)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4984&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주) “이번 관리 방안은 수업과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수행평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AI) 활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재발 방지와 함께 안전한 교육적 활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 원칙<sup>4)</sup>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음.

- 구체적으로는, ① AI 활용 범위 설정, ② AI 활용 과정 표기 지도, ③ 학생 유의사항 안내 및 사전교육, ④ 평가 설계 방향, ⑤ 개인정보보호 등 5가지 핵심 영역을 관리 원칙으로 확정하였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4) [표-1] (교육부-교육청 공동)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기본원칙

- |                                                                              |
|------------------------------------------------------------------------------|
| ● AI는 맞춤형 피드백 제공 등을 위해 수업·평가에서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평가의 공정성·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 ● 교사가 직접 학생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평가를 통해 학생의 독자적 사고에 따른 결과물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 ● 실제 평가 상황에서 AI 활용이 금지되는 행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관련 유의사항을 학생·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해야 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기준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인공지능윤리 지침)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교육적 목적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u>&lt;신설&gt;</u></p> <p><u>6.</u> (생략)</p>	<p>제9조(인공지능윤리 지침) ----- ----- -----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u>6.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기준</u></p> <p><u>7.</u> (현행 제6호와 같음)</p>